

在庫資産原價配分に 관한 考察

李 庸 俊

<目 次>	
I. 序 言 II. 在庫資産原價配分の 前提 III. 在庫資産原價配分の 諸方法 1. 個別法の 理想과 限界 2. 先入先出法の 長短 3. 平均法の 是非 4. 後入先出法の 優劣	IV. 在庫資産原價配分方法의 選 定과 그 適用 1. 諸原價配分方法의 比較檢討 2. 우리나라 企業의 配分方法 選擇의 實態와 그 問題點 V. 結 言

I. 序 言

會計思考가 靜態觀에서 動態觀으로 發展함에 따라 오늘날 企業會計의 中心課題는 傳統的인 財産價値計算으로부터 損益法에 의거한 期間損益計算으로 그 重點이 移行되기에 이르렀다. 動態論의 特徵은 正確한 期間損益計算을 행하기 위하여 理論展開의 焦點을 費用과 收益의 對應關係에 두는데 그치지 않고, 一般의인 의미에서의 費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통 價値額으로서 表示되는 資産까지도 이를 費用의 觀點에서 把握하여 資産을 「費用의 集塊」 또는 「原價의 集塊」로서 보는 데 있다. 依此하여 動態論에서 말하는 資産會計란 곧 資産을 會計期間別로 消費額과 未消費額으로 區分하는 節次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期間損益計算을 重視하는 近代의 會計思考가 擡頭하게 되매 在庫資産會計에 있어서도 當該資産價値의 評定보다는 오히려 期間中の 消費額과 期末의 未消費額을 如何히 合理的으로 測定할 것인가, 말하자면 原價配分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그 主眼이 옮겨지게 되었다. 依此하여 이미 發生한 在庫資産原價를 現在 및 將來에 配分함으로써 消費된 原價部分은 期間費用으로서 損益計算書에 計上되어 期間收益에 對應되고, 동시에 未消費의 原價部分은 未來의 收益에 對應시키기 위하여 資産으로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次期 以後로 移延된다.

이와 같이 原價를 現在와 將來에 配分하되, 消費部分과 未消費部分으로 가르코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에 分解處理하는 것이 바로 在庫資產原價의 期間配分이다. 즉, 期間損益計算은 이 原價配分の 節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在庫資產原價配分に 있어서 當期の 收益에 賦課되지 않는 在庫資產原價는 未消費의 原價로서 貸借對照表에 計上되어 移延된다. 따라서 在庫資產의 貸借對照表價額은 곧 當期の 在庫資產費用을 當期の 損益計算書에 吸收한 뒤에 남은 殘留原價(residual cost)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價額은 當該 在庫資產의 時價 또는 價値를 表示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次期 以後의 收益에 賦課될 것으로서 移延된 原價分을 意味한다.⁽¹⁾

한편 期間損益을 適正히 測定하기 위해서는 우선 當期에 賦課될 在庫資產費用과 次期 以後에 移延된 在庫資產費用이 正確히 區分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在庫資產費用은 收益에 賦課될 費用 중 最大比重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當期の 收益에 賦課되는 在庫資產費用의 決定如何가 期間損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 期間損益의 正確性與否를 左右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當期の 收益에 賦課될 在庫資產費用은 原價配分の 節次에 의하여 次期 以後에 移越될 在庫品原價와 함께 決定되는 것이므로, 在庫資產原價는 어떠한 原理에 立脚해서 配分되는 것인가, 原價配分の 諸方法은 各各 어떠한 意義를 가지며, 또 어떻게 配分の 結果를 달리하는가가 究明되어야 한다. 本稿는 이와 같은 諸問題에 대하여 概略的인 考察을 試圖한 것이며, 우리나라 企業界의 實情을 中心으로 그 問題點을 더듬고 在庫資產原價配分方法을 選定하는데 有助한 指針의 一端을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II. 在庫資產原價配分の 前提

一般的으로 在庫資產原價의 配분에만 主眼을 두는 나머지, 어떠한 原價要因을 在庫資產原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問題에 대해서는 疎忽한 暇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페이턴」 教授의 다음과 같은 警告는 우리에게 많은 示唆를 준다. “어떠한 原價를 在庫資產原價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것은 拂出品原價를 計算함에 있어서 先入先出法 대신에 加重平均法을 採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 以上으로 큰 影響力을 期末在庫品原價上에 미치는 수가 있다⁽²⁾”

(1) 「페이턴」 및 「리틀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在庫資產이나 工場設備는 「價値」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運命을 기다리고 있는 未決狀態에 놓인 原價의 集團이다.”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1940, p. 14
(中島省吾譯『會社會計基準序說』p. 23)

(2) W. A. Paton, "The Cost Approach to Inventories," J.O.A., Oct. 1941, p. 301.

이와같이 「페이턴」은 어떠한 原價를 在庫資產原價에 포함시키고 또 어떠한 原價를 在庫資產原價에서 除外할 것인가의 策定이 期末在庫品原價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침을 說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가 貸借對照表觀點에서 期末在庫品原價에 미치는 影響을 強調하였을 뿐, 보다 一層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損益計算書觀點上的 拂出品原價에 미치는 影響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지 않은 點에 未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點에 着眼한 渡邊教授는 “適正한 期間損益計算은 適正한 在庫資產原價配分에 의해서만 達成되는 것은 아니다. 配分自體는 옳다 할지라도 配分の 對象이 된 在庫資產原價가 適正하게 構成되어 있지 않다면, 結局에 있어서 適正한 原價配分에 到達할 수 없기 때문이다⁽³⁾”라고 論하여, 이 問題의 重要性을 明白히 指摘하고 있다.

즉 正確한 期間損益計算을 행하기 위해서는 在庫資產原價의 正確한 配分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다시 그에 앞서 우선 配分된 在庫資產原價가 正確히 集合되어야 할 것이 要請된다. 왜냐 하면 在庫資產原價의 構成要因으로서 集合된 原價는 結局 製品原價를 經由하여 收益에 關聯지어지며, 在庫資產原價의 構成要因에서 除外된 收益의 支出은 在庫資產原價를 經由하지 않고 收益에서 控除할 費用이 되기 때문이다. 在庫資產을 經由하여 收益에 賦課되는 原價는 原則적으로 販賣가 이루어진 時點에서 費用이 되고 在庫資產原價에서 除外된 收益의 支出은 原則적으로 支出이 이루어진 時點의 費用이 된다. 따라서 어떤 原價項目이 在庫資產原價를 構成하는 것으로 취급되는가에 따라 費用의 所屬期間이 달라져서 期間損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어떠한 原價項目으로써 在庫資產原價를 構成할 것인가는 理論上으로나 實際상으로나 解決이 容易한 問題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見解의 差異가 있으며, 實踐의 差異가 보인다. 먼저 美國 公認會計士協會의 見解를 보기로 한다.

“原價란 一般적으로 資產을 取得하기 위하여 支給된 價額 또는 주어진 對價라고 定義된다. 在庫資產에 대해서 말하면 原價란 原則적으로는 當該資產을 現在의 狀態 및 場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直接 間接으로 필요로 하고 當該資產에 賦課할 수 있는 支出 및 費用의 合計額을 意味한다.”⁽⁴⁾

같은 美國의 會計學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製品의 原價란 當該 生産物에 合理的으로 歸着시킬 수 있는 取得原價의 合計額이며,

(3) 渡邊 進, 『在庫資產會計』 1965, p. 34.

(4) AI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p. 28.

直接・間接의 要素를 포함할 것이다. 製品原價의 어떠한 要素일지라도 여기서 脫漏해서 안된다.”⁽⁵⁾

이에 대하여 英國의 勅許會計士協會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原價를 構成하는 要素는 (1) 物品의 購入價額, 그리고 生産하는 在庫資産에 있어서 製造에 사용된 原材料의 購入價額, (2) 在庫資産을 現在의 狀態 및 場所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했던 直接費用, (3) 當該在庫資産에 附隨하여 발생한 間接費用이다.”⁽⁶⁾

以上은 期間損益計算의 立場에서 본 在庫資産原價를 構成할 原價要因의 決定에 관한 意見이거니와 이들의 引用을 통해서 우리는 現在 財務會計上 在庫資産原價를 構成할 原價項目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考慮되고 있는가에 대한 一般의 傾向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上述한 바로서는 在庫資産原價에서 除外될 原價의 範圍의 限定 乃至는 그 根據를 뚜렷이 밝힐 수가 없다. 원래 在庫資産原價를 劃定하는 目的은 正確한 期間損益計算을 행하는 데 있으므로, 當該 在庫資産의 販賣로 얻은 賣出收益에 그 收得을 위하여 치러진 一切의 費用을 賦課한다는 見地에서 在庫資産原價의 構成의 問題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收益・費用의 合理的인 對應을 達成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1) 他處에서 購入한 在庫資産의 原價, (2) 自己가 生産한 在庫資産의 原價, (3) 一般管理費 및 販賣費로 나누어서 各 경우의 重要點에 대하여 說明한다.

(1) 他處에서 購入한 在庫資産의 原價

他處에서 購入한 在庫資産, 例를 들면 原材料 혹은 轉賣할 目的으로 購入한 商品의 原價는 그 購入原價에 引受運賃・購入手數料・荷役費・倉庫料・保險料 등의 附帶費用을 加算하여 策定한다. 이 때에 買入品에 대한 埃누리나 返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것으로서 購入原價를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 現金買入割引이 利用된 경우에도 現金買入割引額을 控除한 金額으로써 購入原價를 삼는 것이 合理的이다.⁽⁷⁾ 그리고 引受運賃 등을 購入品の 在庫資産原價에 포함시키지 않고 製造間接費로서 따로 취급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理論의으로 妥當하지 않은 方法이다. 왜냐 하면 購入在庫資産의 期末在庫額에 引受運賃 등이 포함되지 않고 一切의 引受運賃이 當期의 製造間接費로 處理됨으로써 原價

(5) AA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Revision, p. 4.

(6)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Recommendations on Accounting Principles*, 1953, pp. 34~35.

(7) 萬若 이와 같이 處理하지 않으면 現金買入割引에 의해서 外上買入金의 支給이 이루어진 경우, 그 差額은 收益으로 認定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收益은 販賣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一般原則에 違背된다.

歸着의 關係가 달라지는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購入在庫資產의 買入事務·檢收·整理·拂出·保管에 관한 費用은 理論上으로는 引受運賃 등과 마찬가지로, 當該購入在庫資產의 原價에 吸收하여, 그것이 製品化하여 販賣된 時期의 收益에 對應시키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러나 그 費用들의 발생과 各在庫資產項目과의 關聯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適正한 配分の 基準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通例이므로 原價歸着의 關係 및 期間損益計算이 달라지더라도, 그 費用들은 製造間接費로 취급하거나 또는 期間費用으로 處理하도록 하여야 한다⁽⁸⁾.

(2) 自己가 生産한 在庫資產의 原價

自己가 生産한 在工品·製品 등의 在庫資產은 주로 原價計算方法에 의하여 그 製造原價가 左右되는데, 이 때에 在庫資產原價의 構成要素가 되는 것은 오로지 生産을 위하여 발생한 直接材料費·直接勞務費 및 製造間接費의 配賦額이다. 따라서 生産과 關聯이 없는 火災·盜難에 의한 損失이라든가, 遊休設備의 減價償却費·維持修繕費 등과 같은 것은 마땅히 生産物의 製造原價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또 원래는 生産과 關係있는 原價項目일지라도 當期の 生産에 關聯되지 않은 部分에 대해서는 當期の 生産物의 原價로 處理해서는 不合理하다. 그리하여 財務會計의 基本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生産과 전혀 關係가 없는 費用 및 當期の 生産에 關聯되지 않은 費用을 除外한 나머지 製造費用만이 生産物原價의 構成要素로 看做되어야 妥當하다.

여기서 附言해야 할 것은 在庫資產原價의 集合에 있어서 標準原價에 의한 評價가 問題거리로 되는데, 現在로서는 이에 대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標準原價에 의한 評價를 支持하는 측은, 實際原價의 標準原價를 超過하는 部分은 浪費·非能率로 말미암은 費用이므로 期間費用으로 處理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는 데 대하여, 實際原價의 立場을 취하는 측에서는 標準原價에 의한 評價를 認定하지 않고, 原價差異를 生産에 關係있는 原價로 看做하여 賣出原價와 期末在庫資產에 各各 配分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⁹⁾

그런데 嚴格히 따져서 財務會計上 標準原價에 의하여 評價하는 方法은 現在 아직 一般的인 承認을 얻을 段階에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다. 왜냐 하면, 實際原價를 收益에 對應시키는 것이 보다 適正한 期間損益의 計算을 期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8) 渡邊 進, 前掲書, p. 38.

購入在庫資產에 대한 適正한 配分基準이 아닌 다른 어떤 基準에 의하여 配分한다 하더라도 收益費用의 對應의 見地에서 보아 滿足할 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9) J. G. Blocker, *Cost Accounting*, 1948, p. 414.

따라서 原價差異가 少額인 경우 以外에는 賣出原價와 期末在庫資產原價로 配分하는 것이 適當하다. 標準原價가 原價管理의 有用한 手段이 된다고 해서 損益計算에 대하여 주는 歪曲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原價差異가 少額인 경우에는 重要性의 原則에 비추어 그 金額을 當期費用으로 處理해도 無妨할 것이다.

(3) 一般管理費 및 販賣費

生産과의 關聯이 密接하지 않은 一般管理費는 보통 在庫資產原價에서 除外되고, 期間費用으로서 處理된다. 一般管理費가 在庫資產原價에서 除外되는 까닭은 그것이 生産과 關聯없는 費用이라는 데서가 아니다, 生産과의 關聯이 不明確할 뿐더러 在庫資產에 대한 合理的인 配賦方法을 찾아내기가 困難하다는 理由에서이다.⁽¹⁰⁾ 그러나 生産과의 關聯이 뚜렷하고 移延된 收益과 對應시킬 수 있는 一般管理費라면 마땅히 在庫資產原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販賣費는 大概 當期の 販賣活動에 關聯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販賣費 중 發送費와 같이 收益認定의 時點에서 발생하는 것은 當然히 當該費用이 발생한 期間의 費用으로 吸收되어야 한다. 그러나 廣告宣傳費와 같이 收益發生의 時點에 앞서서 발생하고, 그 效果가 次期 以後에 걸쳐서 나타날 性質의 販賣費用에 대해서는 在庫資產原價에 포함시키고 그 未消費部分은 次期로 移延하는 것이 合理的이다.⁽¹¹⁾

III. 在庫資產原價配分の 諸方法

1. 個別法の 理想과 限界

在庫資產의 原價를 配分하는 데 사용되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考察의 對象을 주로 그 가운데서도 가장 代表的이라고 생각되는 個別法・先入先出法・平均法 및 後入先出法の 네 가지로 局限시키고자 한다.

먼저 個別法(actual cost method 또는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을 보면, 이것은 期間中에 拂出된 在庫資產과 아직 拂出되지 않은 期末在庫品의 전체에 대해서 개개의 在庫資

(10) 「페이턴」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통조림會社의 社長の 給料은 통조림 檢査工의 賃金과 마찬가지로 儼然히 生産費의 一部이다. 經營者가 그 時間의 大部分을 本社에서 보낸다고 하여 그가 全體의인 生産過程에 關與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편 生産過程에서 발생하는 모든 費用의 極少部分씩을 生産物의 原價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은 것이다. 特定種類・單位의 生産物에 대한 어떤 原價要因의 關係가 극히 間接의이어서, 合當한 割當의 手段을 發見하기가 不可能한 경우가 있다.…… 在庫資產原價에 대해서 얼마간 낮게 表示함이 認定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경우에 限해서이다.”
W. A. Paton and W. A. Paton, Jr., *Assets Accounting*, 1952, p. 56.

(11) Paton and Paton, Jr. *op. cit.*, pp. 55~58.

產別로 當該在庫資產의 實際原價(true cost)를 賦課하는 方法이다. 이 個別法에 의하면 在庫資產의 數量과 種類의 多寡에 관계없이 正確한 原價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實際原價에 의한 在庫資產原價의 合理的인 配分이 可能하게 된다. 이리하여 「原價의 흐름」(cost flow)과 「實物의 흐름」(physical flow)이 時間上 合致되고 製造 또는 販賣 目的을 위한 期中의 拂出品과 아직 殘留하고 있는 期末의 在庫品이 實際의 原價에 의하여 表示되고, 따라서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지므로, 損益計算의 正確性도 確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物價變動이 거의 없거나 輕微한 安定經濟體制下에서는, 個別法은 損益計算의 視點에서 볼때 가장 理想的인 在庫資產原價의 配分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의 發展과 함께 價格水準이 漸次的으로 騰貴함이 原則이며, 또 現實의 經濟도 그 先·後進의 如何를 不問하고 不斷히 變轉하는 動態的 要因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價格變動이 없는 靜態的 經濟與件은 事實上 存在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價格變動을 考慮에 넣지 않는 個別法은 그 適用範圍가 극히 制限되지 않을 수 없다. 價格變動이 있는 경우에 個別法을 適用한다면, 費用을 構成하는 在庫資產의 原價는 過去의 買入 또는 受入時의 實際原價에 의하여 測定되는데 대하여, 이 費用에 對應시킬 收益은 拂出 또는 販賣時의 價格水準에 의하여 認識되며 따라서 同一價格水準에서의 對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른바 「在庫資產 損益」(inventory profit or loss)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正確한 損益計算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個別法에 의한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은 勸奨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個別法을 適用하는 데에는 實務上에 적지 않은 難點이 있다. 즉, 異種의 在庫資產은 물론 同種의 在庫資產이라 하더라도 單價가 각각 다를 때에는 이를 區分하여 保管하고 整頓할 必要가 있으므로 이들 在庫資產의 個別的 處理를 하기 위하여서는 多大한 勞費를 要한다. 이것은 이른바 經濟性의 原則에 符合되지 않는 것이다. AAA의 會社財務諸表基準委員會도 個別法에 의해서 賣出原價를 決定하는 데 대한 가장 有力한 異論은 그 實行不可能性에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¹²⁾

또 個別法에 의하여 在庫資產原價를 配分하는 경우에는 經營者의 恣意에 의하여 利益操作이 行해질 염려가 있다는 非難이 있다. 즉, 在庫資產이 서로 代替的인 物品인 경우 특히 價格變動으로 말미암아 收益과 費用의 對應計算이 同一 價格水準에서 行해지지 못하

(12)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AA), *Inventory Pricing and Changes in Price Levels, Supplementary Statement*, No. 6, A.R., April, 1954, p. 190.

게 되면 經營者는 자기가 원하는 損益額에 가장 適한 單價를 가진 物品을 抽出함으로써 利益額을 임의로 操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A의 調査部는 1940년에 在庫資產에 관하여 發表한 試案 가운데서 個別法의 利益操作可能性을 強調하고 “이 方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不斷한 注意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³⁾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은 非難은 嚴格히 따지면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서로 代替的인 物品 가운데 어느것을 選擇하여 販賣에 부칠 것인가는 經營者의 判斷에 속하는 問題이며, 또 그는 적어도 所期의 利益額을 올리기 위하여 가장 適當한 原價를 가진 物品을 選擇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페이턴」教授도 “經營者는 多數의 類似物品 가운데서 販賣하기에 適한 物品만을 選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非難을 否定하고 있다.⁽¹⁴⁾ 또 AAA의 會社財務諸表基準委員會도 個別法이 利益操作의 餘地를 가지고 있다는 非難은 그렇게 重大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님을 *Inventory Pricing and Changes in Price Levels*에 대한 Supplementary Statement, No. 6에서 說破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個別法은 理論上 理想的이기는 하지만 그 反面에 여러 가지 難點도 內包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適用範圍도 自然히 限定되지 않을 수 없다. 「페이턴」教授에 의하면 “個別法은 完全히 包裝되어 그대로 受拂되는 商品, 分割 또는 變形되지 않고 個別單位로서 受拂되는 商品 등에 實行 可能하나, 材料에는 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一般적으로 實行 不可能하며, 또 代替的인 物品이나 勞動用役, 기타 非物質的인 原價要素에도 適用할 수 없다”고 한다.⁽¹⁵⁾ 具體적으로 말하면 美術品, 骨董品, 貴金屬 및 寶石, 計算機 등 物品의 性質上 個別的 處理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個別法이 效果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先入先出法の 長短

前述한 個別法은 在庫資產 가운데 期間中の 拂出品이건, 또는 期末의 在庫品이건 모두 實際의 原價, 말하자면 眞實의 原價(true cost)를 適用하는데 대하여, 先入先出法(first-in,

(13) *Journal of Accountancy*, October, 1940, p. 328.

(14) W. A. Paton, “The Cost Approach to Inventories”, Addresses delivered at Accounting Clinic and the Central States Accounting Conference, May 1941, p. 98 (*Journal of Accountancy*, October 1941, p. 302)

(15) W. A. Paton and Paton, Jr., *op. cit.*, p. 59.

그는 個別法의 實行이 可能한 商品으로서 家具, 農器具, 自動車타이어를 들고, 반대로 個別法의 適用이 不可能한 商品으로서 는 가솔린, 鐵器類, 石炭, 벽돌, 穀物 등을 들고 있다.

(Paton and Dixon, *Essentials of Accounting*, 1958, p. 342.)

first-out method; Fifo)은 在庫資產의 原價를 配分함에 있어서 拂出品에 대해서는 過去の 實際原價를 適用하고, 期末의 在庫品에 대해서는 最近受入分の 原價를 適用하여 期末在庫品原價를 計算하게 된다.

先入先出法の 이러한 計算方式은 經營內部에 있어서 實物의 흐름이 先入先出的이라는 思考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사실상 大部分의 在庫資產은 그 受拂이 先入先出的의 傾向을 보이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16) 「페이턴」教授도 “企業內部에 있어서 實物의 흐름에 관한 假定은 經營者가 一般의으로 可能한 限, 嚴格히 固守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條件을 表示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先入先出法の 理論的 根據를 높히 讚揚하고 있다. (17)

上述한 바와 같이 先入先出法은 現物의 實際的인 흐름에 即應하여 在庫資產의 拂出品에 대해서는 實際原價로 原價配分을 함으로써 損益計算의 正確을 期하는 한편, 期末在庫品에 대해서는 貸借對照表價額을 그 時點의 時價에 가까운 價格으로 表示함으로써 在庫品の 現實的 價値를 되도록 眞實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 方法이 지닌 뛰어난 長點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先入先出法은 最終買入原價法과 결국 같은 趣旨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方法에 의하면 價格變動이 심하지 않은 比較的 安定된 經濟條件下에서는 위의 正確한 損益計算과 眞實한 財政狀態의 表示라는 兩大目的을 어느 程度 成功的으로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價格變動이 多少 存在한다 하더라도 在庫資產의 回轉率(turnover)이 빠른 경우에는 역시 同一한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페이턴」教授의 見解를 보면 回轉率이 높은 경우에는 先入先出法에 의한 在庫品の 評價額은 最近의 原價(그는 대체로 2, 3日 또는 2, 3週前의 買入品の 價格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再調 達原價(現在의 市場價格)에 가까운 것이 된다고 指摘하였다. (18)

또 先入先出法은 個別法에 比하여 計算이 簡單하고 記錄으로부터 容易하게 期末在庫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方法을 年度別, 月別, 週別 혹은 日別로 適用하건, 또는 在庫資產의 拂出時마다 適用하건 그 拂出價額의 計算結果는 變함이 없으므로 同一한 原價配分이 可能하다는 등 몇 가지 計算技術上의 長點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많은 長點에도 不拘하고 이 方法은 다음과 같은 重大한 非難을 免치 못하고 있다. 첫째, 先入先出法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同一價格水準에 의한 費用과 收益의 對應이 不可能하게 될 念慮가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특히 價格變動이 甚한 때에 顯著하다.

(16) 물론, 油類나 石炭 등과 같은 特定한 在庫資產은 先入先出的의 흐름이 妥當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7) W. A. Paton and Paton, Jr., *op. cit.*, pp. 63~64.

(18) W. A. Paton, *Advanced Accounting*, 1950, p. 142.

價格變動이甚한 인플레이션 時期에 先入先出法에 의하면 在庫資產의 期末在庫額은 現時點의 物價水準을 反映하여 比較的 高水準으로 計上되는데 대하여 그 賣出原價는 過去の 歷史的 原價에 立脚하여 計算된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 低水準으로 計上되므로 그만큼 架空利益(paper profit)을 發生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 이러한 缺點은 前述한 個別法の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이에 관한 AAA 會社財務諸表基準委員會의 見解에 의하면, 物價水準이 變動하는 경우에는 歷史的 原價에 立脚한 先入先出法이 마땅히 制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缺點은 先入先出法の 假定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原價를 表面的으로 固執하는 데 있는 것이다⁽¹⁹⁾.

둘째, 先入先出法을 適用할 때에는 同種의 原材料라 하더라도 物價變動으로 因한 原價의 層이 생기고, 따라서 同種의 原材料를 사용하여 同時에 生産되는 同種의 製品에도 相異한 單價가 適用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缺點이 생긴다.⁽²⁰⁾

끝으로 한 가지 附言할 것은, 會計理論의 重點이 貸借對照表中心에서 損益計算書中心으로 移行한 오늘날에 있어서, 先入先出法이 期末在庫品의 貸借對照表價額을 時價에 가까운 것으로 表示하려는 나머지 期中의 原價消費額, 말하자면 期間費用을 適正히 計算한다는 重大한 課題를 疎忽히 취급할 念慮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前述한 個別法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先入先出法이 받기 쉬운 非難의 餘地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先入先出法은 그 長短點을 勘察할 때 價格變動이 적고 先入先出의 原理에 立脚한 實物의 흐름이 原價의 흐름과 合致하는 경우에 適用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특히 價格變動이 심한 경우에 이 方法을 適用하면 正確한 損益計算은 기대하기 困難하다.

3. 平均法の 是非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서의 平均法이라 하면 一般的으로 單純平均法(simple average method 또는 straight average method)과 加重平均法(weighted average method)을 總稱한다. 그런데 前者는 weight 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計算上의 便法에 지나지 않으므로 原則的으로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서의 勸獎할 수 없다. 따라서 重要的 것은 後者, 즉 加重平均法이며 本稿에서도 주로 여기에 대해서만 考察하기로 한다.

加重平均法에도 總平均法, 月別平均法 및 移動平均法 등이 있는데, 어느것이나 平均法

(19)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AA), *op. cit.*, p. 190.

(20) 渡邊 進, 前掲書, p. 102.

으로서의 共通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이 共通的 性質이란 곧 平均法의 特徵인 平均(average)의 概念이다. 즉 平均法에 있어서는 異種의 單價를 平均하여 이 平均原價를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을 위한 計算價格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平均法의 理論的 根據는 價格變動이 不斷히 일어나고 있는 現實的 與件 아래 同一價格水準에서 費用과 收益을 對應시켜 正確한 損益計算을 期하기 위하여서는 價格變動, 말하자면 物價變動의 影響을 緩和할 수 있도록 異種의 單價를 平均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이때에 平均의 方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各種의 平均法이 생겨 나오게 된다.

그 類型이야 어떠하든간에 平均法은 위의 共通的 性質 이외에, 또 다음과 같은 共通的인 假定 위에 서는 方法이다. 즉, 在庫資產의 受入數量에 있어서 各 購入分(單價가 다른)의 數量的 比率와 같은 構成比로써 拂出이 행해진다고 假定하여 拂出品原價를 計算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受入數量이란 總平均法의 경우는 當期受入數量을, 그리고 移動平均法에 있어서는 拂出이 행해질 때의 在庫數量을 意味한다. 또 拂出이 끝난 뒤의 殘存品에 대해서도 拂出前의 在庫品을 構成하던 各 購入分의 數量的 比率가 그대로 維持되는 것이다. 「페이턴」教授는 平均法의 이러한 假定을 「pool의 假定」으로 간주하였으며, “同種의 生産要素는 融合하여 하나의 同質的인 集團이 되고, 이로부터의 모든 拂出은 平均原價에 의하여 計算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假定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²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平均法은 在庫資產의 受拂을 融合된 同質的인 集團으로서의 pool과의 關係에서 把握하고 있으므로 특히 가솔린과 같이 期初在庫分과 期中의 受入分이 區分없이 混合적으로 收容되어 販賣되는 同質的인 在庫資產의 原價配분에 適合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同質的인 在庫資產이 混合하여 受拂되고 특히 價格變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原價의 흐름은 現物의 實際흐름에 一致되는 것이므로 原價의 配分도 合理的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위와 같은 條件이 充足되는 경우는 드물며, 前述한 바와 같이 大部分의 在庫資產은 先入先出의 흐름인 것으로, 原價의 흐름과 實物의 흐름이 完全 一致하는 경우는 극히 稀少한 것이다. 특히 回轉率이 빠르지 못한 在庫資產의 경우에는 이러한 現象이 더욱더 顯著하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平均法이 想定하고 있는 原價의 흐름은 實物의 흐름과 合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非難이 나오게 된 것이다. 「페트필드」教授에

(21) W. A. Paton and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1940, p. 78. W. A. Paton, "The Cost Approach to Inventories," *Journal of Accountancy*, October 1941, p. 303. 또 그의 名著인 *Asset Accounting*(1952)에서도 pool의 개념으로서 같은 내용을 說明하고 있다(W. A. Paton and Paton, Jr., *Asset Accounting*, pp. 59~60).

의하면 總平均法을適用하면 手中의 在庫品에는 당해 在庫品과는 관련이 없는 過去の 購入分の 原價의 一部가 賦課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이러한 影響은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역시 移動平均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리하여 平均法에 의한 平均單價는 사실상 正確한 原價配分の 基準으로서는 不適合하다고 한다.⁽²²⁾ 실지에 있어서, 前述한 바 있듯이 가솔린 등 油類와 같이 pool로서 混合·收容되어 販賣되는 특수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實際의인 實物의 흐름은 平均的이라기보다는 先入先出的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平均法을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 採擇할 때에는 制限된 범위에서만 合當한 結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4. 後入先出法の 優劣

先入先出法과는 반대로 實物의 흐름이 後入先出的이라는 見地에 서는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이 後入先出法(last-in, first-out method; Lifo)이다. 이 方法에 의하면 當期拂出品에는 比較的 最近의 受入分の 原價가 適用되는데 대하여, 期末在庫品에는 比較的 오래 전의 原價가 適用된다.

後入先出法の 이러한 觀點은 무엇보다도 “現在の 收益에 現在の 原價를 對應시킨다”는 理念을 그 理論의 根據로 하고 있다. 생각컨대 價格水準이 不斷히 變動하고 있는 現實의 動態의 與件下에서는 現在の 收益에 現在の 原價란 同一價格水準에서의 對應에 의하지 않고는 正確한 損益計算은 不可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近代의 會計理論의 焦點이 財産計算中心의 靜態觀에서 損益計算中心의 動態觀으로 移行된 오늘날에 있어서 現在の 收益(current income)에는 現在の 原價(current cost)를 賦課해야 한다는 後入先出法の 論據는 確實히 現實에 符合하는 見解라고 할 수 있다.⁽²⁴⁾ 또한 價格變動이 輕微한 경우에도 특히 回轉率이 낮은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은 이 方法에 의하지 않고서는 損益計算의 正確한 結果를 期待하기 困難한 것이다.

· 이와 같이 後入先出法은 單純한 財産計算보다도 同一 價格水準에서의 費用收益의 對應

(22) H. R. Hatfield, *Accounting*, 1927, pp. 106~108.

(23) 渡邊教授에 의하면, 實物의 흐름이 先入先出的인 경우에도 平均法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原價配分の 結果가 先入先出法에 의한 原價配分の 結果에 近似한 傾向을 가지고 있으면 平均法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實物의 흐름이 先入先出的인 경우에도 移動平均法에 의한 原價配分の 結果가 先入先出法の 結果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平均法 가운데서도 移動平均法の 우수성을 說明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찍이 L. W. Hawkins가指摘하였듯이 移動平均法이 어떤 平均法보다도 實物의 흐름에 보다 잘 即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期初在庫品이 期末在庫品の 數量的 構成比에 미치는 影響이 總平均法の 경우에 가장 크고, 다음이 月別平均法이며, 影響이 가장 적은 경우가 移動平均法임을 說明하고 있다(渡邊 進, 前掲書, pp. 113~117)

(24) 高松和男, 『物價變動會計』, 1965, pp. 160~163.

에 의한 정확한 損益計算에 그 中心的 課題를 두고 利益의 測定을 目的으로 하여 出發하였던 것이며, 그 때문에 實物의 흐름을 反映하는 先入先出法과는 달리 後入先出의인 原價의 흐름을 假定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後入先出의인 原價의 흐름은 “現在의 收益에 現在의 原價를 對應시킨다”라는 損益計算의 理念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動機에서 일찌기 1934年에 美國의 石油協會는 石油業에 있어서의 在庫資產의 統一的 評價方法으로서 後入先出法을 勸奨하였으며, 이 提案에 대하여 加盟會社들은 經營의 基礎에 立脚해서 “現在의 收益에 現在의 原價를 對應시킨다”는 原則을 歡迎하였다고 한다.⁽²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後入先出法은 近代的 會計理論의 中心課題인 損益計算에 置重하여 正確한 利益의 測定이란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在庫資產의 原價를 配分하려는 데서 그의 本質的 優秀性を 찾아볼 수 있다. 실로 價格變動이 심한 인플레이션 時期에 있어서, 또는 價格變動은 輕微하더라도 특히 回轉率이 낮은 在庫資產에 대해서 이 方法을 適用한다면 架空利益의 발생을 排除할 수 있고 따라서 企業資本의 保全이 可能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結果적으로 企業의 實質資本의 維持를 期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사실상 이 方法이 希求하는 窮極의 目的인 것이다. 이러한 目的은 實物의 흐름에 置重하여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을 행하려는 先入先出法에 의하여서는 達成할 수 없으며, 결국 先入先出法에 의하여 算出되는 損益에 대한 不信感에서 登場한 것이 後入先出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後入先出法이 가진 이러한 長點은, 「페이턴」教授에 의하면, 오히려 缺點이 된다고 한다. 즉 最近의 受入分을 賣出原價에 賦課한다는 것은 物價騰貴時에는 賣出原價를 增大시켜 純利益을 減少시키고 價格下落時에는 賣出原價를 減少시켜 營業成果를 過大表示하게 된다. 이리하여 後入先出法은 變動하고 있는 營業活動에 人爲적으로 安定化의 外觀을 부여함으로써 利益의 人爲적인 安定化란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그는 1952年 『資產會計』(Asset Accounting)란 題下의 名著를 낼 무렵에 와서는, 종래와 같은 先入先出法을 全幅적으로 支持하던 態度를 바꿈과 同時에, 損益計算書의 觀點에서 後入先出法이 收益에 最近의 原價를 부과하는 結果, 인플레이션 時期에는 收益과 費用을 同一物價水準에서 對應시키는 效果가 있다고 하면서, 이 效果가 有用性を 發揮한다면 利益의 人爲적인 平均化같은 것은 큰 缺點이 되지 않는다고 說破하였다. 「페이턴」教授의 이러한 後入先出觀의 背後에는 인플레이션의 激化라는 現實적인 經濟與件의 變化가 있었음을 잊어

(25) R. G. Walker, The Base-Stock Principle in Income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Autumn Number, 1936, pp. 81~82.

(26) W. A. Paton, *Essentials, of Accounting*, 1938, p. 484.

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에 後入先出法은 原價主義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弱點이 있다. 즉 期末在庫品數量이 期初在庫品數量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그 差額分은 期初在庫品の 單價로써 計算되기 때문에 그 限界內에서는 收益·費用의 同一價格水準의 對應이 沮害된다. 만약 이 경우가 인플레이션 時期에 발생한다면 높은 收益에 낮은 費用의 對應이 행해지기 때문에 資本維持를 위한 正確한 損益計算, 즉 利益測定의 目的은 達成될 수 없는 것이다. 渡邊教授도 “이 點은 後入先出法이 原價主義에 制約되어 있는 結果로써 생기는 피할 수 없는 缺陷이다”라고 하면서, “收益·費用의 同一價格水準의 對應이 沮害되는 程度는 當期減少分の 數量과 價格變動의 程度에 따라서 다르다”는 意見を 表明하고 있다.⁽²⁷⁾

이 이외에도, 後入先出法에 의하면 在庫資產의 貸借對照表價額은 現在의 狀態를 表示할 수 없다는 一般的인 非難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後入先出法은 그 理論에 있어서 弱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方法이 무엇보다도 近代의 會計理論의 趨勢에 발맞추어, 損益計算書의 觀點에서 正確한 期間損益을 實施함으로써 利益을 測定하고 企業資本의 實質的인 維持를 期하려는데 理論의 根據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不斷한 價格變動(主로 上昇)이 內包되어 있는 오늘날의 動態的인 經濟條件下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價格變動이 輕微한 경우에도 前述한 바와 같이 특히 回轉率이 낮은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을 위해서 이 方法이 가지는 效能을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在庫資產原價配分方法의 選定과 그 適用

1. 諸原價配分方法의 比較檢討

在庫資產의 原價配分問題는 企業의 期間損益計算과 直結되어 期間的 純損益의 算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또한 純利益은 結局 配當과 租稅, 그리고 社內留保 등으로 處分되는 것이므로 窮極에 있어서 在庫資產의 原價配分問題는 企業資本의 維持와도 密接히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在庫資產原價의 合理的인 配分을 위하여 어떠한 方法을 選擇適用해야 할 것인가는 실로 重大한 問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을 위한 方法選擇의 基準을 찾기 전에 먼저 原價配分의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를 確認하고 이 目的에 合致되는 結果를 가져오는 配分方法을 찾아 내어야 할 것이다.

(27) 渡邊 進, 前掲書, p. 292. 및 pp. 348~349.

말할 것도 없이 原價配分의 主目的은 近代的인 會計理論에 좇는다면 正確한 期間損益의 計算과 이에 의한 健全한 企業資本의 維持를 確保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떠한 原價配分의 方法이 위의 目的에 가장 合致되는 結果를 가져오는가를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個別法은 그 理論의 根據가 일반적인 現實과는 잘 符合되지 않으며 또 符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實務上 그 適用에 難點이 많다. 따라서 普遍的인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서 그다지 重要性을 갖지 못하며, 다만 美術品·高級寶石 및 家具 등과 같이 특별히 個別的 취급을 필요로 하는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에만 그 適用範圍가 限定 될 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주로 在庫資產原價配分方法으로서 爭點이 되어 있는 先入先出法·平均法 및 後入先出法 등 代表的인 方法에 考察의 對象을 좁히기로 한다.

이제 이들 3 가지 方法이 어떠한 計算結果를 가져오며, 이것은 近代的 會計의 中心課題인 正確한 期間損益과 企業資本의 完全한 維持라는 目的을 達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問題點들을 提起하고 있는가 具體例를 들어 論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方法 選擇을 위한 妥當하고 合理的인 指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價格上昇과 價格下落이 있었던 어떤 4年間에 걸쳐서 每年 商品을 買入原價의 50%가 加增된 價格(買入價格+買入價格의 50%)으로 販賣하고 그 第4年度의 末期에는 商品이 賣盡된 것으로 假定하여, 先入先出法·總平均法 및 後入先出法을 適用하면 다음 第1表와 같은 結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表를 要約하여 各其의 方法을 適用할 때 나타나는 賣出總利益率의 變動狀況을 表示한 것이 第2表이다.

第2表를 보면 어느 方法에 의하든지 4年間에 걸친 賣出原價와 賣出總利益의 各 合計額은 같다. 그러나 先入先出法에 의한 價格上昇時에는 賣出總利益이 增大하고 價格下落時에는 賣出總利益이 減少하는 現象을 보이는데 대하여, 後入先出法의 경우에는 價格變動에 관계없이 賣出總利益은 比較的 安定的이다. 한편 總平均法은 價格의 變動과 같은 趨勢에 따라 賣出總利益도 變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變動의 幅은 대체로 先入先出法과 後入先出法의 兩結果를 平均한 값과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先入先出法은 價格上昇時에는 利益의 過大計上으로 말미암아 架空利益을 발생시키고, 價格下落時에는 利益의 過少計上에 의하여 正當한 利益이 隱蔽되는 結果를 招來하기 쉽다. 한편 後入先出法의 경우는 價格變動의 影響을 크게 받지 않고 期間的 利益이 平準化되는 傾向이 있으며, 平均法에 의하면 前述한 先入先出法의 경우와 비슷한 期間的 利益의 變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近代的 會計의 가장 重要한 目的인 正確한 期間損益計算의 觀點에서 본다면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서

<第 1 表>

年度 及 去來內容		先入先出法		總平均法			後入先出法		
第一年度	賣出 250單位	@ 36	9,000		9,000			9,000	
	期初在庫 100 "	@ 20	2,000	@ 20	2,000	@ 20	2,000		
	買入 250 "	@ 24	6,000	@ 24	6,000	@ 24	6,000		
			8,000		8,000		8,000		
	期末在庫 100 "	@ 24	2,400	5,600	@ 22.86	2,286	5,714	@ 20	2,000
	賣出總利益		3,400		3,286			3,000	
第二年度	賣出 225單位	@ 48	10,800		10,800			10,800	
	期初在庫 100 "	@ 24	2,400	@ 22.86	2,286	@ 20	2,000		
	買入 250 "	@ 32	8,000	@ 32	8,000	@ 32	8,000		
			10,400		10,286		10,000		
	期末在庫 125 "	@ 32	4,000	6,400	@ 29.39	3,674	6,612	100@20 25@32	2,800
	賣出總利益		4,400		4,188			3,600	
第三年度	賣出 236單位	@ 42	9,912		9,912			9,912	
	期初在庫 125 "	@ 32	4,000	@ 29.39	3,674	100@20 25@32	2,800		
	買入 250 "	@ 28	7,000	@ 28	7,000	@ 28	7,000		
			11,000		10,674		9,800		
	期末在庫 139 "	@ 28	3,892	7,108	@ 28.46	3,956	6,718	100@20 25@32 14@28	3,192
	賣出總利益		2,804		3,194			3,304	
第四年度	賣出 289單位	@ 30	8,670		8,670			8,670	
	期初在庫 139 "	@ 28	3,892	@ 28.46	3,956	100@20 25@32 14@28	3,192		
	買入 150 "	@ 20	3,000	@ 20	3,000	@ 20	3,000		
			6,892		6,956		6,192		
	賣出總利益		1,778		1,714		2,478		

<第 2 表>

年度	賣出額	先入先出法			總平均法			後入先出法		
		賣出原價	賣出總利益	賣出總利益率	賣出原價	賣出總利益	賣出總利益率	賣出原價	賣出總利益	賣出總利益率
1	9,000	5,600	3,400	37.8	5,714	3,286	36.5	6,000	3,000	33.3
2	10,800	6,400	4,400	40.7	6,612	4,188	38.8	7,200	3,600	33.3
3	9,912	7,108	2,804	28.3	6,718	3,194	32.2	6,608	3,304	33.3
4	8,670	6,892	1,778	20.5	6,956	1,714	19.8	6,192	2,478	28.6
	38,382	26,000	12,382	32.3%	26,000	12,382	32.3%	26,000	12,382	32.3%

後入先入法이 다른 어느 方法보다도 가장 適合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見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否定的 異議가 提示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내 理解할 수 있다. 「期初在庫數量+當期買入數量=當期賣出數量」이 成立하여 期末在庫가 없게 되는 時點, 또는 企業의 廢業時點(이 때에도 역시 위의 等式이 成立된다)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느 方法에 의하건 그 結果(利益計算)가 同一하게 되는 것이므로(前掲表 參照), 언뜻 생각하면 在庫資產의 原價配分을 위한 方法의 選擇問題는 深刻하게 考慮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近代의 會計가 繼續企業을 想定하여 期間計算을 행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賣盡이나 廢業 같은 現象은 實際上 극히 稀少한 것이므로, 原則적으로 이를 考慮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은 경우가 偶然히 발생하여 어떠한 原價配分法에 의하든지 그 結果가 같다고 하더라도, 現實적으로는 會計實務上 큰 制約을 이루는 稅率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즉 前掲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入先出法이나 平均法에 의하면 價格上昇時에 利益이 過大表示되며, 또 여기에는 稅法의 規定上 比例稅가 아니라 累進稅가 適用된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다. 이 累進稅率 때문에 企業은 처음 價格上昇時 先入先出法이나 平均法을 適用함으로써 발생한 利益의 過大 表示로 말미암아 多額의 租稅를 負擔하게 되고, 비록 그 後의 價格下落時에 利益의 過少表示와 租稅의 輕減이 있어서 結局은 兩者의 效果가 相計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後入先出法을 適用했다라면 支給하지 않아도 좋았을 租稅額만큼의 企業資本이 早期에 企業外로 流出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말하자면 後入先出法에 의하면 前 方法의 경우보다도 租稅負擔을 遲延시켜 주므로 그만큼 時差益을 얻을 수 있는 셈이 된다.

한편, 物價變動의 一週期에 해당되는 時點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方法에 의하든지 그 結果는 같다고 하는 論議가 있다. 그렇지만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原則적으로 物價는 上昇趨勢로 變動하고 있는 것이므로 水平的으로 變動하여 完全한 變動의 一週期에 해당하는 時點이 다시 오리라고 豫見하기는 곤란하다.

또, 後入先出法 이외의 先入先出法 및 平均法 등을 每期 繼續하여 適用할 때에는 適用期間이 길면 길수록 理論과 實際 사이에는 損益計算上의 目的上 不合理한 影響이 累積될 염려가 있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後入先出法의 有効性은 充分히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後入先出法이 想定하고 있는 論據는 다른 어떤 方法보다도 現實에 符合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後入先出法의 論據는 最近의 收益에 最近의 原價를 賦課하는 手段으로서의 長

點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最近의 原價에 대한 概念은 實質所得計算(real income measurement)을 充分히 展開시킨 경우에는 다른 損益計算書費用項目에도 擴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見解는 後入先出法の 優秀性を 말해 주는 것이다⁽²⁸⁾.

AAA의 會社財務諸表諸概念 및 諸基準委員會도 價格變動이 있는 期間에는 當期の 原價(그 貨幣單位의 一般購買力의 變動을 反映하는 修正된 dollar 價值原價)를 當期の 收益에 對應시킬 수 있는 後入先出法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다. 「페이턴」教授도 한때는 後入先出法을 맹렬히 反對하였으나, 1952年의 『資產會計』란 著書에서는, 後入先出法에 의하면 帳簿原價 가운데 最近의 原價가 當期收益에 賦課되는 結果 收益과 費用의 雙方이 一般 價格水準에 의하여 表示될 수 있다고 하면서 價格變動이 持續되고 그 影響이 利益計算에 미칠 罣려가 있을 때에는 後入先出法이 勸獎할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見解는 그 후 1955年의 『株式會社會計와 財務諸表』라는 名著에서 더욱 뚜렷이 表示되고 있다.⁽²⁹⁾

또 後入先出法은 價格騰貴가 比較的 緩慢한 경우라도 특히 回轉率이 낮은 在庫資產에 대해서는 適合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턴」의 見解를 빌면 損益計算書의 觀點에서 볼 때 在庫資產의 回轉率이 빠른 경우에는 價格變動期에 있어서 最近의 原價에 最近의 收益을 對應시킨다는 後入先入法의 論據는 그렇게 重要하지 않으며, 先入先出法으로도 足하다. 그러나 價格變動이 輕微하더라도 在庫資產의 回轉率이 낮은 때에는 後入先入法에 의하지 않고는 明確한 利益計算이 不可能한 것이다.⁽³⁰⁾ 以上과 같은 諸見解를 考慮할 때 後入先出法이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서 近代會計理論이 指向하는 損益計算的 目的에 이바지하는 바 長點은 다른 어떤 方法보다도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企業의 配分方法選擇의 實態와 그 問題點

우리나라의 法人稅法施行令 第25條의 3項에는 原價法을 適用할 경우에는 個別法, 先入先出法, 後入先出法, 單純平均法, 總平均法, 移動平均法, 最終買入原價法 및 賣價還元法의 8個 方法 가운데서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

그런데 實務界에서는 주로 最終買入原價法, 先入先出法과 平均法을 쓰고 있는 實情이다. 다음 第3表를 보면 서울市內 各 稅務署管內 諸業體에서는 先入先出法을 가장 많이 사용하

(28) W. E. Karrenbrock and Harry Simons, *Intermediate Accounting*, 3rd ed., 1958, (『會計學詳論』, 新井清光譯, 1961, p. 92).

(29) W. A. Paton and Paton, Jr., *Asset Accounting*, 1952, pp. 66~69, 및 *Corporation Accounts and Statements*, p. 544.

(30) W. A. Paton and Paton, Jr., op. cit., pp. 69~70.

〈第 3 表〉

在庫資産評價方法狀況表

(서울시各稅務署管内法人對象)

1967. 11. 30 現在

署別 區分	西大門	龍山	東大門	城東	小公	南大門	乙支路	鍾路	北	光化門	永登浦	中	南	城	麻浦	鷺梁津	計	
法人數	410	385	424	327	890	646	781	312	95	220	450	830	380	157	169	170	6,646	
評價方法申告數	37	61	79	90	121	99	91	83	7	35	274	206	13	56	-	-	1,252	
評價方法	原價法	33	58	67	85	117	95	72	76	6	34	268	200	13	55	-	-	1,179
	①個別法	2	5	4	2	28	18	11	13	2	4	10	74	-	3	-	-	176
	②先入先出法	13	18	23	31	37	23	25	22	2	17	67	32	1	20	-	-	331
	③後入先出法	-	2	1	2	1	2	-	2	-	1	3	3	-	1	-	-	18
	④單純平均法	2	1	-	1	1	2	1	1	-	-	2	11	-	-	-	-	22
	⑤總平均法	13	14	7	22	24	22	15	8	-	6	101	39	-	18	-	-	289
	⑥移動平均法	3	13	12	18	18	17	12	17	-	3	53	33	10	8	-	-	217
	⑦最終買入原價法	-	5	17	8	7	9	8	12	2	2	14	7	2	3	-	-	96
	⑧實價還元法	-	-	3	1	1	2	-	1	-	1	18	1	-	2	-	-	30
時價法	4	1	11	3	3	2	14	6	-	-	6	5	-	1	-	-	56	
低價法	-	2	1	2	1	2	5	1	1	1	-	1	-	-	-	-	17	

資料：筆者調査

[附記]：新設된 麻浦·鷺梁津 兩稅務署 管下 法人의 申告方法狀況은 便宜上, 그 前의 管轄區인 西大門·永登浦署에 포함시켰음

고 있고, 그 다음이 總平均法 移動平均法, 個別法 등의 順序로 되어 있으며, 原價法 後入先出法은 極少數의 企業에서 採用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稅法規定上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을 申告하지 않았거나 申告한 評價方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評價方法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評價方法을 변경한 경우에는 最終買入原價法에 의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이 경우에는 實質上으로는 最終買入原價法이 가장 널리 採用되고 있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在庫資産의 原價配分을 위하여서는 當該企業의 特殊事情과 業種 및 資産의 性格에 따라 어떠한 方法을 選擇·適用할 것인가는 자유지만 이에 대한 長短點을 미리 檢討해보지도 않고 無定見하게 이를 採用하는 것은 옳지 못한 態度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몇몇 實務家들에 의하면 이러한 檢討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다른 企業에서도 많이 採用하고 있는 方法이라는 理由로 先入先出法이나 最終買入原價法 등을 막연히 使用하고 있는 것이 實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在庫資産의 原價配分法을 摸索해 보는 것은 뜻있는 일

(31) 法人稅法施行令 第 25 條 3의 ④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컨대 個別法은 收益과 費用의 個別的 對應을 可能케 하는 것인데, 先入先出法이 想定하듯이 만약 어떤 在庫資產이 正確히도 先入先出의 拂出이 된다면 이때는 「實物의 흐름」과 「原價의 흐름」이 合致될 수 있고, 따라서 先入先出法에 의한 計算結果와 個別法에 의한 計算結果는 서로 近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先入先出法은 結局 個別法의 簡便法이라 할 수 있다. 또 在庫資產 가운데 最終受入分의 單位原價와 이 最終受入分의 直前に 受入된 在庫資產의 單位原價와의 差가 적다든지 또는 期末在庫品 數量 가운데 最終受入分이 占하는 比率이 큰 경우에는 最終買入原價法에 의한 原價配分의 結果와 先入先出法에 의한 結果가 近似하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最終買入原價法을 先入先出法의 하나의 變形이라 하기도 한다.⁽³²⁾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實務界에서는 最終買入原價法을 비롯한 先入先出法群이 가장 널리 採用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昨今の 우리나라의 實情을 살펴 보진대, 價格水準의 上昇은 繼續的이고 또 상당히 빠른 速度로 進行되어 왔으며 物價變動의 週期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輸入原材料, 統制價格의 適用下에 있는 在庫資產, 그리고 自由競爭價格의 條件下에 있지만 어떠한 事由로 인하여 廉賣내지 덤핑이 행해지는 商品 등과 같이 그 價格水準이 주로 人爲的인 操作에 의하여 左右되는 在庫資產의 경우에는 一時的인 物價下落現象이 나타날지 모르나, 우리의 經驗으로는 그러한 예가 극히 적으며 또 比重도 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企業이 安定된 販路를 갖지 못하고 不安定한 市場條件下에서 運營되고 있으므로 在庫資產의 回轉率이 不良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稅法도 比例稅가 아닌 累進稅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與件下에서 正確한 期間損益計算과 이에 의한 企業資本의 完全한 維持를 期하자면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으로는 後入先出法이 優秀하다는 것에 着目하여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이 方法에 의하여 在庫資產의 原價를 配分함으로써 가장 正確한 期間損益을 計算할 수 있고, 따라서 正當한 租稅와 配當 등의 利益處分이 可能해 지므로, 企業資本의 實質的 維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損益計算的 觀點에 선 近代會計가 指向하는 바에도 合致하는 것이다. 先入先出法에 의존함으로써 架空利益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租稅와 配當 등 利益을 不當히 處分케 함으로써 實質的으로 資本의 蠶蝕을 招來하고 있는 過誤를 痛痛히 直視하고 再考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2) 渡邊 進, 前掲書, p. 94.

끝으로 添言할 것은 일단 採用한 在庫資產의 原價配分方法은 特別한 理由가 없는 限, 함부로 變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規制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方法의 無秩序한 變更으로 因한 混亂을 막을 길이 없고 또 正當한 擔稅까지 回避하려는 企業側의 操作行爲를 防止하기 힘들 것이다.

V. 結 言

在庫資產의 原價配分問題는 正確한 期間損益計算과 이에 의한 企業資本의 健全한 維持라고 하는 近代의 會計目的과 直結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原價配分方法이 오늘날의 經濟의 動態的 要因, 특히 價格水準의 不斷한 變動으로부터 오는 影響을 最少限으로 防止 또는 緩和할 수 있고 또 上述한 目的達成에 가장 合理的인가는 各 企業의 特殊事情, 業種의 性格 또는 在庫資產 그 自體의 性質에 따라 相異할 것이므로 一律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本稿에서 지금까지 檢討해온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後入先出法이 이러한 事情에 가장 알맞은 無難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後入先出法이 完全無缺한 方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 方法은 前述한 바와 같이 損益計算書의 觀點에서 보면 훌륭하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貸借對照表의 觀點에서 볼 때에는 不完全하다는 非難을 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會計의 主目的이 損益計算의 觀點으로 移行되고 價格變動 등이 不斷히 일어나는 오늘날의 動態的 與件下에서, 「最近의 收益에 最近의 原價」를 對應시켜 期間利益의 明確한 表示와 企業資本의 健全한 維持를 期하려는 後入先出法이 지니는 意義는 充分히 認識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繼續的인 價格水準의 上昇의 變動, 그리고 大部分의 企業이 不 安全하고 狹小한 市場에 局限되어 있으며 또는 原料에서 製品이 되기까지의 加工期間이 比較的 길기 때문에 在庫資產의 回轉率이 대단히 緩慢하다는 사실 등의 現實的 與件을 考慮할 때 後入先出法의 有效性은 다시 한번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添言할 것은 이 方法이 모든 企業의 모든 在庫資產에 一律적으로 適合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點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그 企業의 特殊事情이나 業種의 性格 또는 在庫資產 그 自體의 性質에 따라서는 後入先出法이 不合理한 結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때에는 물론 보다 合理的인 結果를 가져오는 다른 어떤 配分方法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